철원군 고시 제2013 - 98호

사방지 지정 고시

사방사업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의 토지를 사방지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2항 규정에의거 지형도면 고시하고자 합니다.

2013. 12. 31.

철 원 군 수

1. 사방지 지정내역 : 붙임 사방지 지정 명세서와 같음

소 재 지				지정면적(㎡)	사방사업종류	비고
시·군	읍·면	리·동	지번			
		계	106필지	65,562		
철원	서	와수	산39-1외 9필	13,340	호우피해 산사태복구	
철원	김화	감봉	산121외 95필	52,222	산림생태복원사업	

2. 지정을 요하는 사유 : 사방사업시행 지정관리

3. 특정행위 금지사항
   - 입목의 벌채, 토석, 나무뿌리 또는 풀뿌리의 채취, 가축의 방목 기타 사방시설의 훼손, 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.
   - 단, 하천법에 의한 하천공사로 시행하거나 하천구역의 점용허가를 받은 때에는 예외로 함.

4. 기간 : 사방지 지정일로부터 해지일까지 (약 10년간)

5. 사방지 지형도면 : 붙임 도면 참조

6. 이해관계인은 우리군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길 바라며, 기타 문의사항은 철원군청 축산산림과 산림자원조성담당(033-450-5422)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.